가 정 법 원 판 결 이혼 사 건 원 卫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효정 피 卫 사 건 본 인 변론종결 판 결 선 고

주 문

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0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피고와 사귀다가 피고가 임신을 하였다고 하자,

혼인신고를 하였다.

나. 피고는 가출하였다. 피고는

출생신고를 하여,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었다.

라.	원고는 🧖 형, 피고는	는 ■형인데, 사건본인은	형인 사실을 알게
되자 사건본인이 친기	자인지 의심하게 되었다.		
		_	
	7		
	99 6		
		_	